

# 보도자료



**기획재정부**  
MINISTRY OF STRATEGY  
AND FINANCE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일시    | 2011. 12. 15(목) 배포시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배 포 일 시 | 2011. 12. 15(목) 14:00 | 담당부서 |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       |
| 담당과장    | 이 호 동 (2150-5530)     | 담당자  | 민경신 사무관(2150-5534) |

## 제목: 일·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육아휴직 대체충원제 개선

- 기획재정부는 「'12년 경제정책 방향」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자 증가 및 육아휴직기간 장기화에 대비하고,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체충원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음
  -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, 공공기관이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다양해져
    - 주변 동료나 상사에 대한 눈치보기 현상이 줄어들고 육아휴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
- '10년중 공공기관의 육아휴직자는 2,882명으로 '07년(1,459명)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, '09년 대비 31.4% 증가('11.8월말 현재 2,569명)
  - 육아휴직 기간도 점차 길어져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 비중은 '07년 54.3%에서 '11년에는 72.7%까지 상승

공공기관(285개) 육아휴직자 추이

| 육아휴직<br>기간 | 육아휴직자 수 <sup>1)</sup> (명)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비중(%)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'07년                      | '08년  | '09년  | '10년  | '11.8월 <sup>2)</sup> | '07년  | '08년  | '09년  | '10년  | '11.8월 <sup>2)</sup> |
| 6개월 이내     | 667                       | 847   | 945   | 1,089 | 702                  | 45.7  | 47.4  | 43.1  | 37.8  | 27.3                 |
| 6개월 초과     | 792                       | 940   | 1,249 | 1,793 | 1,867                | 54.3  | 52.6  | 56.9  | 62.2  | 72.7     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 | 1,459                     | 1,787 | 2,194 | 2,882 | 2,569               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               |
| 증가율(%)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| 22.5  | 22.8  | 31.4  | -               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| -                    |

주1) 육아휴직자는 연도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을 기준

주2) '11.1~8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인원을 기준

- 이처럼 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출산·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, 사회적으로도 출산·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
  - \* 육아휴직 대상연령: ('88.4)만 1세 미만 ('06.3)1세→3세 ('10.2)3세→6세
  - \* 고용보험기금 급여액(월, 만원): ('01.11 신설)20 ('02.12)30 ('04.2)40 ('07.4)50 ('11.1)월 통상임금의 40%(상한 100, 하한 50)
- 반면,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장기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원상 별도조치가 없어 육아휴직자도 정·현원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
  - 대체인력으로 정규직을 충원하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, 계약직 또는 여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해결하고 있는 상황
  - \* 예시: 정·현원이 100명인 기관에서 육아휴직자 1명 발생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, 현원은 101명이 되어 경영평가상 인력운영에 감점요인이 됨
- 공공기관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출산·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'12년도부터 6개월 이상 장기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여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
  - \* 예시: 정·현원이 100명인 기관에서 육아휴직자 1명 발생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, 육아휴직자는 현원 계상시 제외하므로 현원은 100명
- 또한,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시(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공백)에도 정규직으로 결원보충이 가능(산전후휴가일부터 결원보충 가능)
- 한편, 계약직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경우 인건비 예산(잡급)이 부족하면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
- 육아휴직 대체충원 규모는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
  - \* 육아휴직자 복귀시 일시적인(예시: 3개월) 현원초과는 인정하고, 육아휴직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불용되므로 결원보충을 위한 인건비는 추가재원 없이 기존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 가능
-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'12.1월에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」 및 「'12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」에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계획임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